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7/2564 호

경제 특구의 투자 촉진 대책

2014년 12월 3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2/2557 호 투자촉진 정책 및 규정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

이는 경제 특구에 대한 투자 촉진과 발전 분배 촉진을 위한것으로 경제와 사회 전반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투자촉진법 불교년 2520년 16항, 18항, 31항 그리고 35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경제 특구에 대한 투자 촉진 기준을 발표를 함

1. 특별 구역이란 정부 내각에서 규정과 기준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구역으로 지정한 특별 투자 촉진 구역으로 투자 촉진을 통해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는지역을 의미함
2. 일반적인 활동범주에 속하는 사업이 특별 구역내에서 투자 촉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2/2557 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혜택을 받을수 있음

2.1 기계류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2.2 추가적인 법인세 면제 혜택을 3년 간 부여하며 총 합산하여 8년이하로 제한

2.3 그룹 A1과 A2에 속하는 법인세 면제를 받는 사업의 경우 8년동안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와 혜택을 부여받으며 법인세 면제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5년간 정상 금리의 50%에 해당되는 투자금을 공제받을수 있도록 허용함

2.4 사업 소득이 생긴 날로부터 10년간 2배의 교통비, 전기 및 수도 비용을 공제받을수 있도록 허용함

2.5 구조물의 설치 및 편의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금을 공제받을수있는데 이는 투자금의 25%에 투자금을 공제받을수 있도록 허용함

2.6 해외로 수출을 해 나가는 원자재나 재료의 경우 5년간 관세 면제를 받을수 있도록 허용함

2.7 비과세 권리 및 혜택

3. 경제 특구에 위치한 대상 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와 혜택을 받을수 있음

3.1 기계류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 3.2 토지와 순환자본을 제외한 투자금의 100%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8년간 법인세 면제
- 3.3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으로 법인세 면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정상 세율의 50%를 적용함
- 3.4 사업 소득이 생긴 날로부터 10년간 2배의 교통비, 전기 및 수도 비용을 공제받을수 있도록 허용함
- 3.5 구조물의 설치 및 편의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금을 공제받을수있는데 이는 투자금의 25%에 투자금을 공제받을수 있도록 허용함
- 3.6 해외로 수출을 해 나가는 원자재나 재료의 경우 5년간 관세 면제를 받을수 있도록 허용함
- 3.7 비과세 권리 및 혜택
- 4. 위 안내사항은 2021년 1월 4일 이후부터 2022년 마지막 영업일까지 투자촉진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에 한하여 적용함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림

2021년 3월 19일에 고시

General Prayut Chan-o-cha

(Prayut Chan-o-cha)

총리

투자촉진위원회장